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교도관점검규칙에는 몹시 추울 때 또는 비가 올 때에도 실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1955년 제정 때부터 유지된 과도한 권위적 문화, 경직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에서 당일 특이사항 알림 및 직원 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교정기관의 점검 현실에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움

이러한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쉽게 추가·변경하기 위해 부령형식의 현행 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교도관직무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입법예고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법무부령 제 호

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

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3항 중 “따로 법무부령으로”를 “법무부장관이”로 한다.